

공적연금가입기간연계방안 연구

2007. 8.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출 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공적연금가입기간연계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8월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

공 동 연 구 자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경 (공무원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박성민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병률 (사학연금관리공단 제도연구센터 과장)

김대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목 차

요약	9
제1장 공적연금 현황 및 연계관련 문제점	18
제1절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18
제2절 공적연금 연계관련 쟁점사항	32
제2장 공적연금연계관련 선행연구들 검토	36
제1절 고철기 · 오영호 · 김성희,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간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36
제2절 민재성 · 김용하,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연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4	39
제3절 이용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연계 및 조화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2001	40
제4절 노인철 · 이용하 · 박성민,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연계방안』, 한국재정 · 공공 경제학회 정책토론회 자료, 2005	43
제5절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들	46
제3장 연금제도간 연계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50
제1절 우리나라의 특수직역연금간 연계제도	50
제2절 일본의 연금연계제도	52
제3절 독일의 연금연계제도	55
제4절 미국의 연금연계제도	57
제4장 연금제도간 연계방안 검토사항	62
제1절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방안관련 기 합의사항	62

제2절 기합의된 연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 대두	64
제3절 연계방안 검토사항 : 쟁점사항 중심으로	65
제5장 연계방안별 재정전망	78
제1절 각 공적연금별 재정추계 모형 및 기본 가정	78
제2절 가입기간 연계대안 개요 및 기본 가정	97
제3절 가입기간 연계대안별 재정추계 결과	100
제6장 연계방안 관련법 검토사항	136
제1절 가입기간 연계관련 각 공적연금법 조항	136
제2절 가입기간 연계관련 특별법(안)	139
참고문헌	143
[부록 1] KDI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147
[부록 2]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건의안	154
[부록 3] 가입기간 연계방안관련 각 공적연금법 상세조항	159
[부록 4] 일본의 (구)통신연금통칙법(1961. 11. 1 법률 제181호, 1985년 법률 제34호에 의거 폐지)	190
[부록 5] 철도청 민영화와 방위사업청 신설의 경우 특례조항	215

표 목 차

〈표 1- 1〉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19
〈표 1- 2〉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0
〈표 1- 3〉 국민연금 연도별 급여종별 급여지급현황	21
〈표 1- 4〉 현행제도 유지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전망	22
〈표 1- 5〉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07년 4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재정 전망	23
〈표 1- 6〉 공무원연금 적용대상자와 수급자 추이	24
〈표 1- 7〉 공무원연금 적용대상자 및 수급자 전망	25
〈표 1- 8〉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26
〈표 1- 9〉 사학연금 적용대상자와 수급자 전망	27
〈표 1-10〉 사학연금 장기재정전망(2006년 불변가격)	28
〈표 1-11〉 연도별 군인연금 수급자 현황	29
〈표 1-12〉 연도별 군인연금 현역자 및 수급자 전망	30
〈표 1-13〉 군인연금 재정현황	31
〈표 1-14〉 군인연금 장기재정전망	32
〈표 1-15〉 재직기간별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 퇴직자 현황(2006)	33
〈표 1-16〉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 퇴직자의 연령대별 분포(2006)	33
〈표 1-17〉 계급별 군인연금 퇴직자 현황(2005)	34
〈표 1-18〉 국민연금에서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자의 연령대별 분포(2006)	34
〈표 2- 1〉 연계유형의 장·단점 비교	38
〈표 2- 2〉 연계방식의 장·단점 비교	42
〈표 2- 3〉 소급적용 연계방식의 주요 내용	43
〈표 2- 4〉 연금제도간 연계방식의 구조적 특징 및 사례	44
〈표 2- 5〉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 전망	47
〈표 2- 6〉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 전망	48

〈표 3- 1〉 연금제도간 연계모형의 유형화	61
〈표 5- 1〉 장래 인구와 부양비 전망	80
〈표 5- 2〉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비율 및 징수율 가정	80
〈표 5- 3〉 타공적연금 가입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 현황	82
〈표 5- 4〉 타연금가입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률	83
〈표 5- 5〉 특수직역연금종별 재취업자 현황 및 재취업률	84
〈표 5- 6〉 국민연금가입자중 특수직역연금으로의 이동자 전망	85
〈표 5- 7〉 특수직역연금 퇴직자중 국민연금 재가입자 현황	86
〈표 5- 8〉 특수직역연금 퇴직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	87
〈표 5- 9〉 특수직역연금 퇴직자의 연령계층별 국민연금 재가입률	88
〈표 5-10〉 특수직역연금퇴직자중 국민연금으로의 이동자 전망	88
〈표 5-11〉 공무원수 가정	92
〈표 5-12〉 경제기초율 가정	92
〈표 5-13〉 현행제도 유지 시 가입기간 연계대안	98
〈표 5-14〉 제도 개혁 시 가입기간 연계대안	99
〈표 5-15〉 추계시 기본가정	100
〈표 5-16〉 대안 I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 전망	101
〈표 5-17〉 대안 II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 전망	101
〈표 5-18〉 대안 III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 전망	102
〈표 5-19〉 대안 IV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 전망	102
〈표 5-20〉 대안별 · 연도별 재정소요 전망(불변가격)	103
〈표 5-21〉 대안별 · 연도별 재정소요 전망(명목가격)	103
〈표 5-22〉 대안 I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 전망(불변가격)	104
〈표 5-23〉 대안 I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 전망(경상가격)	104
〈표 5-24〉 대안 II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 전망(불변가격)	105
〈표 5-25〉 대안 II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 전망(경상가격)	105
〈표 5-26〉 대안 III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 전망(불변가격)	106
〈표 5-27〉 대안 III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 전망(경상가격)	106

〈표 5-28〉 대안 IV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 전망(불변가격)	107
〈표 5-29〉 대안 IV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 전망(경상가격)	107
〈표 5-30〉 국민연금 재정전망(I 안, III안)	108
〈표 5-31〉 국민연금 재정전망(II안, IV안)	109
〈표 5-32〉 연계에 의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규모 변화	110
〈표 5-33〉 연계에 의한 국민연금 수지차 변화(경상가격 기준)	112
〈표 5-34〉 연계에 의한 국민연금 수지차 변화(불변가격 기준)	113
〈표 5-35〉 연계대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수급자의 변화	115
〈표 5-36〉 연계대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재정수지의 변화(명목가격 기준)	117
〈표 5-37〉 연계대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재정수지의 변화(불변가격 기준)	118
〈표 5-38〉 연계대안(I 안, II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보전률의 변화	120
〈표 5-39〉 연계대안(III안, IV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보전률의 변화	121
〈표 5-40〉 연계대안에 따른 사학연금 퇴직연금수급자의 변화	123
〈표 5-41〉 연계대안에 따른 사학연금 재정수지의 변화(명목가격 기준)	125
〈표 5-42〉 연계대안에 따른 사학연금 재정수지의 변화(불변가격 기준)	126
〈표 5-43〉 연계대안에 따른 사학연금 수지균형보험료율의 변화	128
〈표 5-44〉 연계대안에 따른 군인연금 퇴직연금수급자의 변화	130
〈표 5-45〉 연계대안에 따른 군인연금 재정수지의 변화(명목가격 기준)	132
〈표 5-46〉 연계대안에 따른 군인연금 재정수지의 변화(불변가격 기준)	133
〈표 5-47〉 현 제도와 연계대안별 국가 보전률 차이	134
〈표 5-48〉 현 제도와 연계대안별 국가 보전률 차이	135
〈표 6- 1〉 가입기간연계 관련 국민연금법 조항	136
〈표 6- 2〉 가입기간연계 관련 공무원연금법 조항	137
〈표 6- 3〉 가입기간연계 관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조항	138
〈표 6- 4〉 가입기간연계 관련 군인연금법 조항	138

그 림 목 차

[그림 3-1] 일시금 수급자의 제도간 연계절차	50
[그림 3-2] 연금 수급자의 제도간 연계절차	51
[그림 3-3] 일본의 신·구 연금체계 비교	53
[그림 3-4] 독일의 공적연금체계	55
[그림 3-5] 현행 미국의 연금체계	58
[그림 5-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의 구조	79
[그림 5-2]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개요도	89
[그림 5-3] 사학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개요도	93
[그림 5-4] 군인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개요도	96
[그림 5-5] 연계대안(I 안, II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보전률 추이	120
[그림 5-6] 연계대안(III안, IV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보전률 추이	121

요약

I .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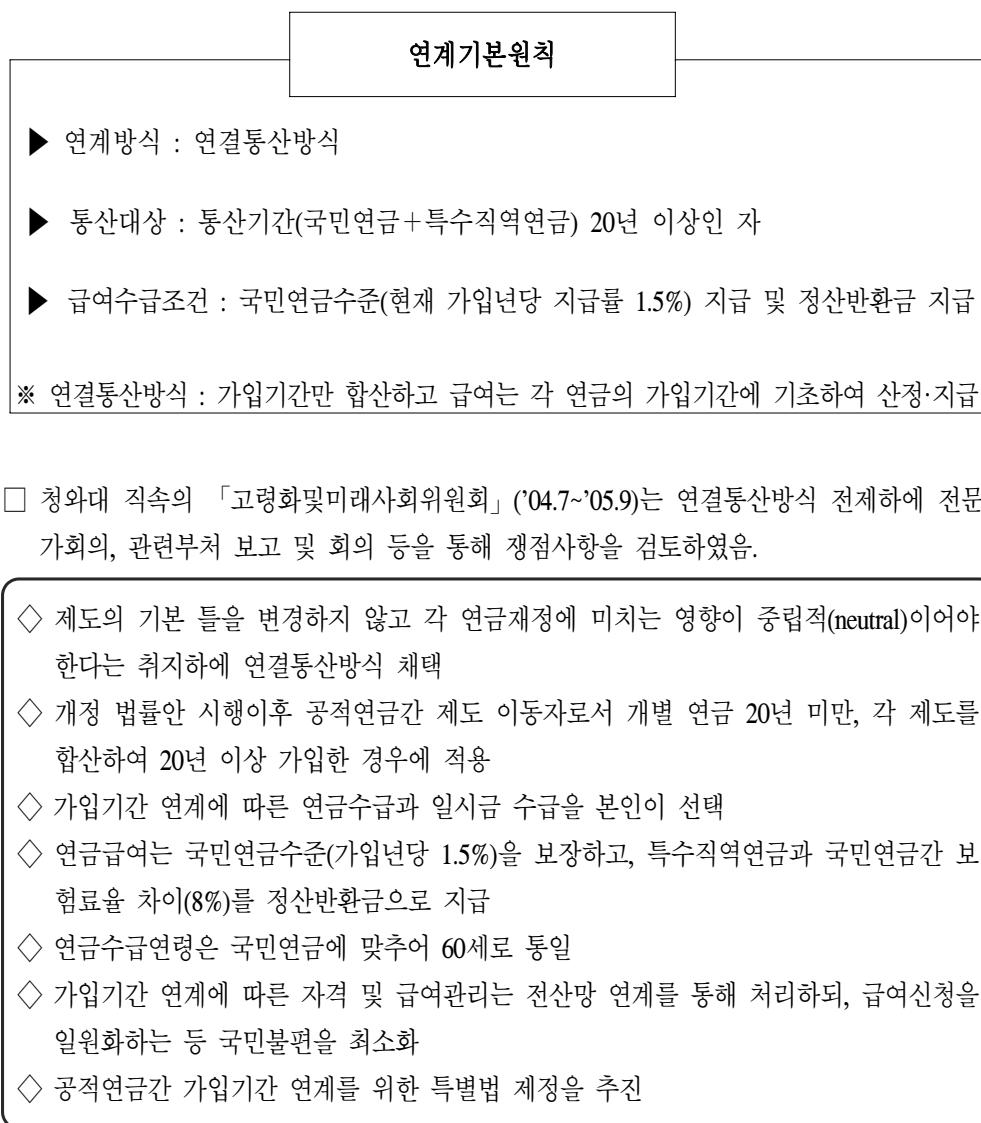
1. 연구배경

-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평생직장 위주로 도입되어 있어 민·관 교류 확대 등 최근의 고용 유연화 추세에 부적합
- 특수직역연금간에는 제도간 연계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사이의 연계장치는 결여되어 있음.
 - '06년 현재 공무원연금 퇴직자(30,021명)의 34%, 사학연금 퇴직자(21,929명)의 88%, 군인연금 퇴직자('05년, 15,404명)의 85%가 20년 미만 재직으로 인해 퇴직시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급
-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민·관간 인적교류 저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발생이라는 측면에서 연계제도 도입이 시급함.

2. 기존의 부처간 합의내용과 재논의 필요성

가. 기존의 합의내용

- 총리실 산하 「공적연금연계기획단」 ('03.7~'04.6)에서는 연계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한 후, 연결통산방식을 제안하였음('04.6 국무회의 보고내용)



나. 기 합의된 연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 대두

- 환경변화로 인한 부처의 입장 변화
 - 통산가입기간으로 '20년'이 논의되었으나, 2006년 이후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

(안)에서는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기 합의된 연금지급방안(국민연금 수준의 연금+정산반환금 지급)은 개념상 혼동, 재정 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연결통산방식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임.
- 더불어, 국민연금(과세소득)과 공무원연금(보수월액)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보험료가 산정된다는 가정 하에 보험료 차액을 지급한다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II . 가입기간 연계방안의 쟁점사항 검토

- 본 보고서에서는 연계와 관련된 쟁점 사항의 해결책으로 특정 대안을 제시하는 것 보다 향후 부처간 협의 또는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의 활용을 위하여 대안별 예상되는 장·단점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 개별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않고, 가입기간만 합산(연결통산방식)
 - ◇ 가입기간 연계를 통한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가능한 최소 합산기간을 10년과 20년인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
- * 현재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는 연금수급권 확보에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을 10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

1. 연계의 강제성 및 임의성 부여

- 연계방안 마련의 기본취지 및 연계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의 사례(강제성을 부여)를 고려할 때, 연계에 따른 연금수급 여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화
 - 이미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반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퇴직일시금만을 수급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계제도를 강제 적용시킴.

- 이 경우, 2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제도 폐지 필요
- 연계 강제시 예상되는 장·단점
 - (장점)연계를 강제함으로써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단점)퇴직 일시금 지급제한에 따른 민원 발생

2. 연계허용 최소가입기간 단위

- 각 연금에서 1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1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 중, '1년 이상'을 연계허용 최소가입기간단위로 설정
 - 향후 연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추세에 맞추어 '1월 이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궁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년 이상으로 할 경우 직종간 이동이 잦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나, 소액연금 지급과정에서의 높은 행정비용을 고려하였음.
- '1년 이상'으로 할 경우의 예상되는 장·단점
 - (장점) 높은 행정비용 문제 해소
 - (단점) 직종간 이동이 잦아지는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3. 가입기간 연계에 따른 연금급여 산정

- '연결통산방식'의 기본원칙에 따라 각 제도별로 가입한 기간에 대해 각 제도에서 보장하는 급여수준을 지급
 - 과거 부처간 합의사항이었던 보험료 차액(8%)을 퇴직금 성격의 반환정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음.

※ 과세소득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간 보험료 차이는 2%에 불과함 (국민연금 9%, 특수직역연금 11%).
- 예상되는 장·단점
 - (장점) 연결통산방식의 기본원칙(각 제도에의 종립적 영향) 반영
 - (단점) 특수직역연금의 재정 부담 가중

4. 통산연금의 수급연령

- 한 제도의 독자적인 가입기간만으로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60세부터 통산연금을 수급하는 방안 도입 권고
 - 연계 대상자 중 어느 한 제도에서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사람의 경우에는 각 제도의 수급연령을 그대로 적용
- 예상되는 장·단점
 - (장점) 연금제도별 특수성을 인정하여 통산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신축적으로 운영
 - (단점) 40대부터 연금을 수급하는 일부 특수직연금제도의 연금수급연령이 고착화될 우려

5. 연계 시 유족연금, 장애연금 포함여부

- 유족 및 장애연금에 대한 연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특수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과 유사한 ‘일반 장애’와 ‘재직(최소가입기간 미만) 중 사망’에 대한 급여제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함.
- 국민연금과 유사한 급여가 특수직역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에 당장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 연계제도 적용 대상자가 재직(최소가입기간 미만) 중 사망할 경우 국민연금 수준의 통산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 연계제도 적용 대상자가 비공상 장애를 입을 경우 국민연금 수준의 통산 장애연금을 지급함.
- 예상되는 장·단점
 - (장점) 연계제도 취지(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부합
 - (단점) 상이한 유족의 범위로 인한 민원발생
 ※ 유족의 범위
 - 국민연금 :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한함), 부모 및 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한함)
 - 특수직역연금 :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 부모 및 조부모

6. 제도 경과규정 마련 여부

- 연계제도의 적용시점을 제도도입 이후로 한정할 것인지, 제도 도입 이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것인지가 생점
 -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최종자료는 신법시행 이후 제도간 이동자에 한해 연계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음.
 - 신법제정 이후 이동자에게만 적용시킬 경우 연계제도 부채에 따른 연금 사각지대 해소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연계제도 도입시 이미 가입기간 연계조건을 갖추었던 사람에 한해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함.
 - ※ “연계제도 도입시 이미 가입기간 연계조건을 갖추었던 사람”이란 현재 논의되는 연계대안을 적용할 경우 수급권 확보가 가능한 통산가입기간의 내력이 있는 자를 의미함.
- 예상되는 장·단점
 - (장점) 다수의 공적연금 수급권 미확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책의 역할 수행
 - (단점) 추가적인 재정 소요 및 소급적용에 따른 법적 안정성 저해

7. 급여지급방안

- 수급자가 불편하더라도 당분간 각 연금관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연금액을 산정·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함.
 - 각 연금관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연금액을 계산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안(1안)과 최종 가입기관에서 급여신청을 받아 선지급한 후 기관간 재정 이전하는 방안(2안)이 대립
 - 2안의 경우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도간 급여관련 규정이 동일·유사할 경우 제도적용이 수월함.
 - 그러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연금산정방식·소득조사방법·연금연동방식이 매우 상이하므로 1안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향후 특수직역연금 개혁추이에 맞추어 2안으로의 변경검토 필요
- ※ 단, 급여신청은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한 기관에서 담당

- 예상되는 장·단점
 - (장점) 효율적인 업무추진
 - (단점) 연금수급자의 고객만족도 저하 우려

8. 통산법의 형태(특별법 제정 여부)

- 개별 연금법을 통해 연계제도를 입법화할 경우 각 연금제도에 연계와 관련된 다수의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하므로 특별법 제정이 합리적임.
 - 통산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법이 복잡해지는 문제를 피할 수 있음.

III. 연계대안별 재정전망

1. 연계대안 및 기본전제

〈검토된 연계대안〉

구분	가입기간		개혁안 적용 여부	
	10년	20년	현행제도	개혁안
대안 I	○		○	
대안 II		○	○	
대안 III	○			○
대안 IV		○		○

-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I, II)와 특수직연금을 개혁하는 경우(III, IV)로 구분하여 검토
- 대안 III과 IV는 재직자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소득대체율(과세소득 기준)과 보험료를 적용시킨다는 가정을 채택
 -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내포된 반면, 특수직역연금은 100% 소득비례연금임.
 - 따라서, 신규 공무원에 대해 국민연금과 동일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를 적용시켜도 국민연금보다 높은 연금액이 예상됨.

※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약 160만원), 공무원연금가입자 평균소득(약 290만원)

2. 대안별 연금수급자 및 재정소요 전망

〈가입기간 연계에 따른 대안별 연금 수급자 증가 전망〉

(단위: 천명, %)

연 도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대안 I	기존연금수급자	2,679	4,478	7,252	9,844	11,127	10,977	10,112
	추가 연금수급자 (증가율)	5 (0.2)	80 (1.8)	203 (2.8)	474 (4.8)	826 (7.4)	1,079 (9.8)	1,140 (11.3)
	기존연금수급자	2,678	4,478	7,252	9,844	11,127	10,977	10,112
대안 II	추가 연금수급자 (증가율)	4 (0.1)	58 (1.3)	161 (2.2)	350 (3.6)	541 (4.9)	681 (6.2)	726 (7.2)
	기존연금수급자	2,680	4,485	7,269	9,857	11,054	10,893	10,041
	추가 연금수급자 (증가율)	4 (0.1)	73 (1.6)	183 (2.5)	424 (4.3)	751 (6.8)	975 (9.0)	1,036 (10.3)
대안 III	기존연금수급자	2,680	4,485	7,269	9,857	11,054	10,893	10,041
	추가 연금수급자 (증가율)	2 (0.1)	51 (1.1)	141 (1.9)	301 (3.1)	469 (4.2)	581 (5.3)	626 (6.2)
	기존연금수급자	2,680	4,485	7,269	9,857	11,054	10,893	10,041
대안 IV	추가 연금수급자 (증가율)	2 (0.1)	51 (1.1)	141 (1.9)	301 (3.1)	469 (4.2)	581 (5.3)	626 (6.2)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및 공직개방 등에 긍정적 영향
- 연금 수급자 증가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대안 I의 경우 2070년 기준수급자 대비 11.3%가 증가하여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가입기간 연계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 전망〉

(단위: 십억원, 2006년 불변가격)

년도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계
대안 I	기존 수지차	30,385	36,728	21,633	-18,149	-85,512	-184,226	-226,085	-3,206,674
	연계후 수지차	30,994	37,817	23,002	-18,450	-88,677	-191,195	-235,407	-3,331,052
	(차이)	609	1,089	1,369	-301	-3,165	-6,969	-9,323	-124,378
대안 II	기존 수지차	30,385	36,728	21,633	-18,149	-85,512	-184,226	-226,085	-3,206,674
	연계후 수지차	30,956	37,799	23,037	-18,200	-87,836	-189,886	-233,568	-3,295,790
	(차이)	571	1,071	1,404	-51	-2,324	-5,660	-7,483	-89,116
대안 III	기존 수지차	30,369	35,905	19,425	-20,686	-73,751	-147,892	-160,501	-2,443,616
	연계후 수지차	30,837	37,116	21,270	-19,645	-74,161	-150,262	-163,635	-2,443,480
	(차이)	468	1,212	1,845	1,041	-410	-2,371	-3,134	136
대안 IV	기존 수지차	30,369	35,905	19,425	-20,686	-73,751	-147,892	-160,501	-2,443,615
	연계후 수지차	30,825	37,199	21,399	-19,354	-73,515	-149,530	-162,851	-2,418,676
	(차이)	456	1,294	1,974	1,332	236	-1,638	-2,350	24,940

- 연계방안 시행 초기에는 반환일시금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미지급으로 지출이 감소하여 연계제도 도입 전과 비교시 수지흑자 발생
 - 그러나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본격적인 연금수급 시점 도래시 상황이 반전되어 수지적자 규모가 확대됨.
- 다만, 공적연금 개혁 시(대안 III, IV) 본격적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급여액 하락으로 인해 연계에 따른 재정소요액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남.